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3
----------	------

제출년월일 : 2006년 6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문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함 (제5조1 신설)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제22조)

3. 근거법령

- 지방세법[일부개정 2005.12.31 법률 7843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16호, 일부개정 2005.12.31.]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첨부 : 1. 기타 참고자료(준칙안) 1부
 2. 입법예고(사본) 1부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

제22조제2호중 “동조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를 “동조 제1항 제2호의 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지방세법

[법률 제7843호, 2005.12.31. 일부개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16호, 2005.12.31.]

제2조 (과세면제등 허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면제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시행일 2006.8.5.]

第121條의2 (外國人投資에 대한 法人稅 등의 減免)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外國人投資(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大統領敘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減免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1.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強化에 繫要한 產業支援서비스업 및 高度의 技術을 隨伴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영위하는 사업
 -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3. 기타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租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大統領敘이 정하는 사업
- ②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한하여 減免하되, 당해 사업을開始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課稅年度(事業開始日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당해 事業所得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外國人投資比率(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減免對象稅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外國人投資企業이 減免期間중에 內國法人(減免期間중인 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合併하여 당해 合併法人의 外國人投資比率이 감소한 때에는 合併전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比率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3)~(12) (생략)

www.kci.go.kr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우)

제목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시달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1297(2006.03.07)호의 이첩입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 적용시한이 2006.12.31이므로 금년말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부일: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템01-12(세정업무관련과장)

조자

시행 세정과-2506 (2006.03.07.) 접수 세정과-2623 (2006.03.09.)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618 / 전송 043) 220-2619 / pjt1223@cb21.net / 공개

○○도세 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도세 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범위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각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2006.1.1부터 시행 가능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생 락)</p> <p>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부자</p>
<p><신설></p>	<p>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범위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도 ○○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각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2006.1.1부터 시행 가능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5조의1(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하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다.</p>

입법예고 결과

★도세담당	세정과장				
박문수	전결 05.26 박성웅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1. 조례명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06. 4. 10. ~ 2006. 5. 1.
3. 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내용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문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규정을 개정.

5.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입법예고

제천시 공고 제 2006 - 457 호

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民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4. 10.

제 천 시 장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례명 :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문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함.

□ 주요개정내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함 (제5조1 신설)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제22조 제2호)

□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5월 1일까지 제천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전화640-5261, FAX 640-525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